



법원,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 (The Copyright Royalty Board)는 음악 스트리밍 이용료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김혜성 | 변호사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이하 '심판소')의 음악 스트리밍 이용료 체계 결정 절차가 적절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2020년 8월 7일 심판소의 이용료 체계 결정에 절차적 결함을 인정하여 심판소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5년 동안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적용될 강제 이용허락료 체계를 재검토하게 됨.

사실관계

-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The Copyright Royalty Board, 이하 '심판소')는 매 5년마다 로열티율과 조건 등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 즉 기계적 복제권 이용허락(mechanical license)에 대한 로열티 구조를 다시 정하는 절차를 진행함.
- 이번 심판소의 강제 이용 허락료 결정 이전, 서비스 제공자는 (1) 특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과 (2) 서비스 제공자가 사운드 레코딩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 라는 두 요소를 고려한 결정 공식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유형에 따라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담했음.
- 심판소는 5주간의 의견 청취(evidentiary hearing) 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5년 동안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적용될 강제 이용허락료 체계(compulsory rate)를 정함.

- 심판소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운드 레코딩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총액에 한도를 두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의 15.1%, 로열티 총 지급액의 26.2%로 강제 이용 허락료 체계를 최종 결정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적용되던 것보다 높은 것임.

○ 이러한 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아마존, 구글, 판도라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 등이 항소함.

항소법원의 판단¹⁾

○ 항소법원에서는 심판소의 결정에 따른 강제 이용 허락료 체계가 부적절하게 소급 적용되고, 심판소가 강제 이용 허락료 체계 결정에 앞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정하였으며 충분한 설명 없이 특정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적 권한 없이 심판소 자신의 결정을 변경한 것이라는 등 행정 절차적인 측면이 다투어짐.

○ 심판소가 기계적 복제에 대한 이용 허락료를 상당액 인상함과 더불어 로열티 총 지급액 한도를 없앨 것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됨.

○ 그동안은 심판소가 이용료 허락 체계를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정당한 근거 없이 협의를 거절하였음.

○ 의회는 심판소에 결정 변경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으므로 심판소가 ‘서비스 수익’의 정의를 결정 이후에 변경한 것도 잘못임.

1) George Johnson v. Copyright Royalty Bd., Case No. 2019-1028 (D. C. Cir. Aug. 7, 2020)

- 따라서 심판소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5년 동안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적용될 강제 이용 허락료 체계를 재검토해야 함.

평가

- 항소법원은 심판소의 결정에 절차적 결함이 있음을 인정한 것일 뿐, 심판소가 결정한 강제 이용 허락료 자체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

참고 자료

<https://bit.ly/32QONZ6>

<https://bit.ly/31Vjmxm>



독일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이후 체결된 라이선스 실시료가 과거 손실된 이익 산정에 미치는 영향 판단

오혜민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2020년 6월 18일 독일연방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 (Abmahnung) 이후 체결된 라이선스계약의 실시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도시지도에 대한 저작권 분쟁
 - 원고는 도시지도 (이하, 지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지도 일부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3년간 무단으로 이용함.
 - 피고가 지도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었음.
-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견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지도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연간 820유로(한화 약 113만 원)의 실시료를 책정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라이선스는 피고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 체결된 것으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함께 고려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함.

하급심 판결

- 제1심 뮌헨지방법원은 원고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6500유로(한화 약 900만 원)이 인정되었음.
- 그러나 제2심 뮌헨고등법원은 제1심의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의 근거로 제시한 라이선스 실시료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가치를 입증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므로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1800유로(한화 약 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함.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요지

(BGH, Urt. v. 18.06.2020 – Az.: I ZR 93/19)

-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3문
 -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서 저작권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저작권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동조 동항 제2문은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침해자가 권리침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고려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함.
 -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3문은 또한 “침해된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 허락을 얻어야 했을 때, 적절한 보상액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을 기초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3문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단

-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되어 경고가 이루어진 이후 제3자들과 체결되어진 라이선스는, 과거의 손실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을 일반적인 상황보다 실시료가 더욱 높은 금액을 책정하여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의 경고(Abmahung) 이후 체결된 라이선스의 실시료는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3문이 “적절한 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기초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추가적으로 원고는 지도의 공급자로서 원고의 지도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 원고가 책정한 라이선스 실시료가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책정된 라이선스 실시료가 합당할 정도로 지도의 시장경쟁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즉, 라이선스의 보상금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적절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 만약 상거래 관행에 따른 적절한 라이선스 실시료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근거로 인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원고의 손해에 대한 추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임.

평가 및 시사점

-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이후의 라이선스 및 실시료
- 독일연방대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이후의 라이선스는 과거의 손실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더욱 높은 금액으로 실시료를 책정하여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저작권 침해 경고 이후의 라이선스 실시료는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3문의 “적절한 보

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기초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한 점은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https://bit.ly/34W1q7F>

<https://bit.ly/32SZVVw>

<https://bit.ly/2YWaHsE>



헌법재판소, Hadopi의 일부 권한은 위헌이다

박성진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Hadopi가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신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의 내용 자체는 합헌이나, 모든 종류의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함.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부여된 Hadopi의 권한

- 2009년 프랑스 입법부는 소위 ‘창작과 인터넷에 관한 법률¹⁾’을 제정함으로써 독립 행정기구인 Hadopi²⁾를 설립함³⁾.
- 한편, 프랑스 지식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이하 ‘CPI’)에 따르면, 공중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접근 권한 명의자(이하, ‘인터넷 서비스 가

1) “Loi création et internet”, Loi n° 2009-669 du 12 juin 2009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2)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3) 이 기관은: 첫째,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이 공중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통신망에서 적법하게 이용될 것을 촉진하고 감시하는 기능 (CPI 제L. 331-13조, 1°); 둘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가 위에서 설명한 종류의 통신망에서 침해가 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기능 (동조 2°); 셋째,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식별조치의 수준을 관리하고 그 채택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 (동조 3°)을 수행해야 함.

입자’)는 그들이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끔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 (CPI 제L. 336-3조, 제1문단).

- 이 의무가 잠정적으로 불이행되었다는 신고가 Hadopi에 접수되는 경우, Hadopi는 이 의무를 준수할 것을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음 (CPI 제L. 331-25조 ⁴⁾).

○ CPI 제L. 331-21조는 Hadopi가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 네 가지의 권한을 부여함 :

- 신고받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사건에 대한 사실 심리를 진행할 권한 (동조 제2문단) ;
- Hadopi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문서와 그 사본을 획득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해당 문서의 형태는 상관이 없으며, 이 권한에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보들도 포함됨 (동조 제3문단 및 제4문단) ;
- “그중에서도 (notamment)”,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을 온라인에 복제, 전송,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인터넷 연결 서비스 가입자의 개인 신원정보,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망사업자에게 요청해서 획득할 수 있는 권한 (동조 제5문단).
- 그러나, Hadopi는, 예컨대 1970년 7월 17일의 프랑스 민법 제9조가 보호하는 사생활 정보와 같이 “법으로써 보호하는 비밀(secret protégé par la loi)”에 대한 접근 권한은 가지지 않음 (동조 제1문단).

4) 프랑스에서는 “점진적 대응제도 (réponse graduée)”라고 불리며, 국내에는 흔히 “삼진아웃 제도”로 소개됨.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배경

- 사실, Hadopi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CPI 제L. 331-21조의 제3문단부터 제5문단이, 프랑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통신 정보 보호의 가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 여부 심판이 제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 첫 번째 심판인 2009년 6월 10일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위의 세 개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함⁵⁾.
 - 그 청구범위를 좁혀, 사생활 보호 침해에 대한 위헌심판이었던 2015년 8월 5일 결정에서 이 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림⁶⁾.
 - 1958년 11월 7일 명령의 제23-2조 제3문단과 제23-5조 제3문단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심은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이상 금지됨.
 - 그러나 프랑스 국사원 (Conseil d'État)은 2009년과 2015년에 동일 재판소가 각각 다른 결정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의 재심사를 허용함⁷⁾.

헌법재판소의 일부 합헌 결정의 내용

- 먼저 프랑스 헌법재판소⁸⁾는, 헌법 제34조에 비추어보건대,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식재산권 수호’라는 가치와 ‘국민의 자유 수호’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되짚음.

5)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 2009-580 du 10 juin 2009.

6)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 2015-715 du 5 août 2015.

7) Décision n° 433539 du 12 février 2020.

8) Décision n° 2020-841 QPC du 20 mai 2020.

- 이 재판소는 이에 비추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L. 331-21조의 제5문단이 Hadopi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 위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판단함.
 - 우선, 이 권한을 통해서 CPI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저작(인접)권 침해 근절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수호’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임.
 - 동시에, Hadopi라는 특수 행정기관, 그중에서도 일부 임명을 받은 공무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은 이 권한이 강제집행의 성격을 띤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더구나, Hadopi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미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그의 의무를 잠정적으로 불이행할 경우로 한정되었으며, 이용되는 정보의 종류도 Hadopi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 수호’라는 가치도 수호함.
 - 따라서 이 조항이 “그중에서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권한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의 내용

- 반면, 재판소는 제L. 331-21조의 제3문단과 제4문단, 그리고 제5문단의 “그중에서도”라는 표현은 ‘지식재산권 수호’와 ‘국민의 자유 수호’라는 가치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이 조항의 제3문단과 제4문단의 경우, 그 수신자와 이용범위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그의 의무를 잠정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연결고리 없이, 단순히 모든 종류의 정보들과 그 사본을 Hadopi가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와 같은 추상적인 정보 이전은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어렵기 때문임.

- 같은 이유로 “그중에서도”라는 표현은 제L. 331-21조의 제5문단이 나열하고 있는 종류의 정보들 이외에도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불특정의 기타 정보를 Hadopi가 획득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위헌임.

Hadopi의 평가

- 2020년 5월 25일 공식성명에서 Hadopi는, 현행 점진적 대응 제도는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를 수호하고 있음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재확인되었다고 결론지음.
 - 이와 같은 결론이 가능한 이유는, 위헌으로 결정된 제L. 331-21조의 제3문단과 제4문단의 자료들의 경우, 자신들이 점진적 대응 제도를 ‘실무로서’ 운영한 이래로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임.
 - 즉, CPI 제L. 331-13조에 의하여 Hadopi가 자신들에게 임명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집해왔던 정보들은 이번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정보들뿐이기 때문에, 그의 실제 업무 내용에는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따라서 Hadopi의 권한은 합헌이라고 결론지음.

참고 자료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decision/2020/2020841QPC.htm>.

<https://bit.ly/2Rqlo2N>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를 보상하는 보험 마련

권용수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이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나 광고를 늘리고 있는 상황을 눈여겨보고, 인터넷상의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새로운 사이버 리스크 보험을 마련함.

배경

- 기업은 사업 활동을 하면서 다른 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음.
- 저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보험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음.
- 이러한 배경으로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東京海上日動火災保險)은 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이버 리스크 보험을 제공해 왔음.
- 최근 기업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나 광고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업을 둘러싼 사이버 리스크(저작권 침해 등)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광고 홍보 활동이 온라인·오프라인 양면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광고에 사용

하는 일러스트에 관계된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종래 사이버 리스크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보험 ‘TOKIO CYBER NEXT’를 개발·판매함.

새로운 보험의 특징

- 지금까지의 사이버 리스크 보험도 기업의 사업 활동을 둘러싼 사이버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였음.
 - 기존 보험도 온라인 콘텐츠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배상책임 등(조사비용, 재발 방지 비용, 해외에서 이루어진 손해배상 청구, IoT 기기에 대한 대응 등)을 포괄적으로 보상하고, 사이버 리스크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광고에 사용되거나, 인터넷으로 전송되거나, 온라인 게임 캐릭터 제작에 사용되어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등에 있어서 보험이 적용될 것임.
- 새로운 보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기업을 둘러싼 사이버 리스크가 한층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보장 대상을 확대함.
- 온라인 콘텐츠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배상책임에 더해, 종이 매체 등 오프라인 콘텐츠 또한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뿐만 아니라 의상권, 인격권 침해 등에 기인하는 배상책임도 새롭게 포함함으로써 미디어에 게재된 부적절한 콘텐츠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보장함.
- 새로운 보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나 광고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에 따른 저작권 침해 위험을 더욱 폭넓게 커버하는 것이 목적임.

평가

- 새로운 보험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인식이 낮고 저작권 관련 분쟁에 따른 충격이 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콘텐츠 업계에서는 계약서 보급에 따른 배상책임 명확화,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 개인의 권리 의식 향상, 디지털 콘텐츠 확산에 따른 권리관계 복잡화, 회사가 아닌 임원 개인에 대한 소송 증가 등으로 기업의 공격적인 사업 활동을 보장하는 수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새로운 보험은 의의가 있음.
- 다만 저작권 침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침해 억제 효과를 악화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고의·중과실 침해에 대한 면책 규정, 지급보험금의 상한 설정이나 자기 부담 설정, 보험료 할증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억제 효과가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참고 자료

<https://www.tokiomarine-nichido.co.jp/>

<https://news.goo.ne.jp/article/bcnplus/trend/bcnplus-176443.html>

호주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편리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하다

최푸름 | University of Debrecen, LL.M

호주 정부는 코로나 19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교육, 연구를 위한 저작물 사용을 더욱 간편하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함.

배경

- 호주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물의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항상 염두에 두어 왔음
-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나 정부 기관 등에서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호주 정부는 저작물 이용의 장벽을 없애고, 간편한 저작물 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법안을 발표함.

개정 내용

- 정부 법률 라이선스 제도의 효율화
 - 정부 차원에서 저작물 이용 허가 제도를 개정하여 이용자가 신탁 단체에 지불해

야 할 저작물 이용료의 요율 결정 방법과 이러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법을 단순화함.

- 호주 정부 차원에서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호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안전이 되는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복제, 전송할 수 있음.

○ 저작물의 교육 목적 이용에 관한 예외

- 화재나 코로나19 등 지역 혹은 국가적인 재난이라면 교육 기관과 도서관, 직업 학교 등은 ‘특별한 경우’를 인정받아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양의 저작물을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학습 목적 등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새로운 공정이용의 기준 도입

- 인용이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영리 목적이더라도 인용되는 부분이 매우 사소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가능함.
- 이러한 인용은 문화 관련 기관, 교육 기관, 정부 기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개인적 연구 조사 등에만 허용되며, 반드시 기존의 관행과 합치하여야 함.
- 이 새로운 기준은 교육 기관, 박물관, 도서관, 정부 기관, 연구학자 등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임.

○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이용 격려

- 상기 개정안은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우나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현대 사회의 공중에 접근 가능하게 하여,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이 공공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연구 혹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찾지 못했다면, 이용자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이용 후에 저작권자가 특정된 경우, 이용자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다만, 저작권자를 특정하기 전에 이용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평가 및 전망

- 호주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식적인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혁의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사이 협의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 해당 개정안은 호주 저작물의 디지털화 비중을 높여, 팬데믹 시대에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인 저작물 이용을 장려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 자료

<https://www.communications.gov.au/departmental-news/copyright-access-reforms>